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조사 배경 / 3

II. 미국의 자국산 구매의무 관련 법 / 5

1. Buy American (바이아메리칸 법)
2. Buy America (바이아메리카 법)
3. Trade Agreement Act (통상협정법)
4. 기타 미국산 구매 의무 관련 법규정

III. WTO GPA 및 FTA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규정 / 12

1. WTO 정부조달협정 (GPA)
2. 한미 FTA 정부조달 개방 조항

IV.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 전망 / 16

V. 향후 우리기업의 바이아메리칸 대응 방향/ 19

요 약

【조사배경】

-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아메리칸(미국산 구매의무 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 ①미국산 제품 사용 최대화 ②편법적 예외적용을 최소화 방안 지시
 -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에 트럼프 정부가 공약한 자국산 구매의무 조항이 포함 여부가 주목됨.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법】

- ① (바이아메리칸)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구매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연방법(입찰에서 외국산에 가격 불이익을 주는 방식)
 - 적용대상: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제조·비제조 제조품, 원자재 및 건설자재
 - * 연방조달규정과 통상협정법에 따라 미국산 구매 의무 규정이 유예 가능
- ② (바이아메리카) 주·지방정부가 연방 교부금(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조달할 경우 미국산 사용의무를 규정 (연방교통지원법(1982년)에 포함)
 - 연방기금이 투입되지만, 조달 행위주체가 주·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조달에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칸과 구별됨.
- ③ (통상협정법) 국제 통상협정(GATT 도쿄 라운드)을 이행하기 위한 연방법
 - (WTO GPA) WTO 체제 안에서 국가 간 상호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 현재 총 47개 WTO 회원국 가입
 - * GPA는 연방정부 조달에만 해당되나, 미국 37개 주정부가 GPA를 준용하여 시장을 개방
 - 미국 등 무역협정국은 조달 시장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 원칙에 합의. 바이아메리칸은 국제법(상위법)인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FTA에 의해 효력 정지
 - * 최혜국: ①WTO GPA 가입국, ②미국과 FTA 체결국, ③특정 저개발국, ④특정 캐리비안 인근 국가
 - (한미 FTA) 양국은 FTA의 정부조달 조항을 통해 상호 조달 시장 개방
 - 우리나라는 FTA와 동시에 GPA 가입국인 관계로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법 비교>

분류	바이아메리칸	바이아메리카	통상협정법
적용 대상	연방기관의 일반물품 (제조품, 원자재) 및 건설자재	주·지방정부의 철강 및 제조품 (Manufactured Goods)	일부 연방기관의 일반물품, 건설자재 및 서비스
기본 요건	3,500달러 이상 조달 시 미국산 제품 구입 의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 시 미국산 철강·제조품 구매	WTO GPA 체결국, FTA 체결국 제품은 미국산과 동일하게 취급 (양허금액 10만달러(상품, 서비스), 685만 달러(건설))

요 약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 전망】

- ① 트럼프 정부, 인프라 입법에 앞서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에 착수
 - ①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②예외(면제) 규정 최소화 ③자유무역협정의 허점 개선 ④미국(자국)산 철강 기준 강화 등 방안 마련 중
- ②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관철 여부에 벌써부터 회의적 전망 제기
 - 바이아메리칸은 건설원가 상승, 타국의 무역보복 등을 초래하여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통 공화당 주류의 저항에 직면
- ③ 규제강화 보다는 결국 추가 시장개방 요구에 집중할 가능성
 - 미국은 FTA 개선사항으로 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대응마련 필요

【향후 우리기업의 바이아메리칸 대응 방향】

- ①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참여
 - 우리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 GPA를 통해 미국 37개 주정부는 가입국(우리나라 포함) 기업에게 조달시장을 개방함.
 - 단,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는 주·지방정부별로 상이하여 진출 지역의 관련 법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
- ② 공공조달 경험이 많은 현지기업과 협업
 - 미 공공조달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우리기업은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소수계기업 등과 M&A, 합작투자 등 파트너십 고려 필요
 - 현지협력사를 통해 현지사정에 어두운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인 비용 산정, 인력 관리, 기타 인허가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해소
- ③ 민간-공공 파트너십(P3) 사업 참여
 -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공약(민간자본 참여 확대)에 따라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민자 사업(P3)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연방정부 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사업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
 - * 단독 진출보다는 금융기관, 건설사, 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 진출이 유력

I 조사 배경

① 트럼프 대통령,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발표

- 현지시간 4월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아메리칸(미국산 구매의무 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¹⁾에 전격 서명함.
 - 연방 부처의 조달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1)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 하고, (2)바이아메리칸 법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지시
 - 상무장관이 법무부의 이행방안을 종합 검토, 향후 220일 후(11.23일 전까지) 정책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함.
 - 또한, 상무장관과 미국통상대표(USTR)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조항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시
 - 민간 정책연구소 Beacon Policy Advisor는 향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조달 시장 개방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분석
-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17.2월) 주요 교역국들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도가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²⁾

② 인프라 투자 법안에 포함될 「바이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논란 가중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1조 달러 공공 인프라 투자의 이행을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함.
 - * “인프라 법안 통과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트럼프대통령, 4.18일)
- 한편, 연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에 과연 트럼프가 공약했던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WTO 및 자유무역협정 위배 소지 △미국산 사용 시 비용 상승효과 △‘자유무역 신봉’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등 법안 통과에 장애물 산적

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18/presidential-executive-order-buy-american-and-hire-american>

2) <https://www.gao.gov/assets/690/682663.pdf>

③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바이아메리칸 강화 요구 여론 높아져...

- 현지 여론조사(Morning Consult, 1.20~22일)³⁾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미국산 구매의무 정책(바이아메리칸)에 찬성하여 반대(22%)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참고)
-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발표 직후 수행된 여론조사(라스무센, 4.19~20일)에서도 72%가 미국산 구매의무 정책에 찬성

[표1] 바이아메리칸 정책 찬/반 여론조사

분류	세부분류	찬성	반대	보류
전체	등록유권자	61%	22%	16%
정치성향	공화당 지지	79%	12%	8%
	민주당 지지	48%	33%	19%
	중도 성향	59%	21%	21%

[자료원] Morning Consult 여론조사 결과(1.20~22일)

- 역대 최저 지지율(36%, 5/10)을 기록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최상의 카드로 활용될 듯
- 인프라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극 지지하는 바이아메리칸 채택이 유력

④ 「바이아메리칸(카)」 정책 동향 분석과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미국은 바이아메리칸(카) 제도를 정비·강화하는 것 외에도 상대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수단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정부와 업계는 예의주시할 필요
- 1조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은 우리기업(건설, 기자재, 운송기계, 보안, IT 기업 등)에게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기회임.
 - 동 보고서를 통해 우리기업들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미국산 구매 의무 규정을 해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3) https://morningconsult.com/wp-content/uploads/2017/01/170103_crosstabs_POLITICO_v3_KD-1.pdf

II

미국의 자국산 구매의무 관련 법

1

Buy American Act (바이아메리칸 법)

- **[개요]** 1933년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불황 타개와 고용창출을 위해 도입된 연방법.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를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 바이아메리칸 법의 시행을 위해 연방조달규정(FAR)은 정부조달 입찰에서 외국산 대비 미국산 제품에 가격 특혜를 주는 제도 마련⁴⁾
 - 즉, 경쟁 입찰에서 외국산 제품의 입찰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최종 제안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미국산 대비 가격 불이익을 주는 방식
 - * △美대기업 참여 입찰인 경우 최소 6% △美중소기업 참여 입찰의 경우 최고 12%
△美국방부 조달인 경우 최고 50%까지 외국산 입찰가를 상향 조정함.
 -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입찰가가 낮을 경우, 미국산 제품 가격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판단, 외국산 제품 구매를 허용할 수 있음.

[박스1] 바이아메리칸 법, 입찰가격 특혜 예시

- ▶ (대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500,000로 최저 입찰가를 제출하고 미국 대기업이 \$550,000을 제출했을 경우, 외국기업 입찰가에 6%를 가산한 \$530,000가 최종 입찰가로 고려되어, 여전히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외국기업이 수주
- ▶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입찰가 \$500,000에 12%를 가산한 \$560,000가 최종 입찰가로 결정되어 \$550,000를 제시한 미국 중소기업이 수주

- **[대상]** 바이아메리칸 적용 대상으로는 非제조(unmanufactured) 또는 제조된(manufactured) 기자재(supply) 및 원재료(material) 등이 해당됨. (단, 서비스 부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非제조) 비제조품(기자재, 건설자재 포함)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채굴, 생산된 완제품인 경우에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48 C.F.R. §25.105 (supplies); 48 C.F.R. §25.204 (construction materials)

- (제조) 제조 완제품(manufactured end product)은 (1)로컬 콘텐츠 비율이 50% 이상 또는 (2)상업용 기성품(COTS)⁵⁾의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 (표2 참고)

[표2] 바이아메리칸 법규 상 미국산 인정 기준

구분	기자재	건설자재
비제조품	미국 내에서 채광 또는 생산된 완제품(원료, 자재, 물품 등)	미국 내에서 채광 또는 생산된 완제품 (주·부계약자 모두 해당)
제조 완제품	로컬 콘텐츠 비율이 50% 이상인 완제품 또는 상업용 기성품(COTS)	로컬 콘텐츠 비율이 50% 이상인 완제품 또는 상업용 기성품(COTS) (주·부계약자 모두 해당)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 **[예외]** 바이아메리칸 법의 예외(유예) 적용 요건은 연방조달규정(FAR)과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에 따라 별도로 규정됨.

- (FAR)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시 바이아메리칸 유예 가능 (즉, 조달 구매관의 판단에 따라 외국산 제품을 구매 사용할 수 있음.)

- (1) 조달 금액이 3,500 달러 이하 미소(micro) 구매 시
- (2) 미국산 사용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 (3) 미국산 제품의 양과 질 측면에서 국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4) 미국산 가격이 불합리(unreasonable)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군부대 내 유통매장(commisary)에서 재판매되는 제품
- (6) 상업용 정보기술 제품⁶⁾ 구매의 경우

- (TAA) 미국과 정부조달협정(WTO GPA, FTA 등)을 맺거나, 빈국지원 프로그램(Caribbean Basin Initiative) 국가 등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바이아메리칸 유예 (상세내용 8 페이지 참고)

- (1) 통상(정부조달)협정에 명시된 최소양허금액(threshold) 이상 구매 시
- (2) 통상협정에서 합의된 정부기관 또는 서비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 (3) 통상협정에서 명시된 특수 상황의 경우 (중소 또는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제도 등)

5) 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 일반적으로 (1)일반 상업제품이며, (2)일반 상업시장에서 대규모로 판매되는, (3)정부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품 변형이 필요치 않는 경우를 충족하는 제품

6) 상업용 정보기술제품의 경우 부품의 50% 이상이 외국산이라도 미국 내에서 최종 제조만 이뤄지면 정부 조달 납품 가능

2 Buy America Act (바이아메리카 법)

- **[개요]** 연방정부(교통부 등)가 주·지방 및 非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기금을 교부한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 연방정부 기금이 투입되지만, 실제 조달 행위 주체는 주·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칸 법과 구별됨.
 - WTO GPA 및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포함⁷⁾)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조달 개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 무상원조, 대출, 지분투자, 보증, 재정 인센티브 등의 연방(중앙)정부 지원 포함
 - 따라서, 바이아메리칸과 달리 바이아메리카는 WTO나 자유무역협정의 시장개방 원칙과 상관없이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을 유지 가능
- **[규정]** 연방기금이 투입되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 운송 기계(부품) 및 기타 제조품 사용을 의무화함. (연방교통지원법, 1982년⁸⁾)
- 교통 인프라 건설 지원을 주관하는 연방교통청(FTA), 고속도로청(FHWA), 철도청(FRA), 항공청(FAA) 등은 기관별 바이아메리카 규정 보유 (표4 참고)
 - 미국산 제품 가격이 외국산 대비 25% 이상 높을 경우,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면제되어 외국산 제품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

[표3] 교통부 산하 기관별 바이아메리카 규정 비교

기관	미국산 인정을 위한 로컬 생산 비중	양허금액	면제사유
연방 교통청	철강 : 100% 제품 : 원가의 60%이상	\$100,000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시
연방 고속도로청	100%	\$2,600 또는 계약금액의 0.1%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시 / 원재료구매의 경우
연방철도청	100%	\$100,000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 / 납기 미준수
Amtrak	50%이상	\$1,000,000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 / 납기 미준수
연방 항공청	60% 이상	-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시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 KORUS FTA, Chapter 17(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17.2. 3항(a)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assistance that a Party provides, including cooperative agreements,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guarantees, and fiscal incentives;

8)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

3 Trade Agreement Act (통상협정법)

- **[개요]** 1977년 통과된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은 미국이 체결한 국제 통상협정(GATT 도쿄 라운드)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법
 - △국제 교역시장 개방 확대 △미국의 수출입 진흥 △국제 규범 정비를 통한 국가 간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조달시장 개방]** 미국 등 무역 협정 체결국(designated countries)은 정부조달 시장에서 상호 최혜국(most-favored-nation) 대우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합의
 -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협정 체결국 기업에 대한 바이아메리칸 법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함.
 - 바이아메리칸 법은 국제법이자 상위법인 WTO GPA 또는 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 발생
 -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WTO GPA와 FTA에 명시된 양허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 입찰에서 특정국가 기업의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함.
 - 현재 USTR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국은 (1)WTO GPA 가입국, (2)미국과 FTA 체결국, (3)특정 저개발국, (4)특정 캐리비안 인근 국가 (표3 참고)
- * 우리나라는 GPA와 한미 FTA를 통해 TAA적용 대상. 하지만, GPA, FTA 가입국이 아닌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은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대상국에서 제외

[표4] TAA가 적용되는 대상국(designated countries) 리스트

구분	국가명
WTO GPA 체결국 (47개)	Armenia, Arub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S. Korea ,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Ukraine, United Kingdom
FTA체결국 (20개)	Australia, Bahrain,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S. Korea , Mexico, Morocco, Nicaragua, Oman, Panama, Peru, Singapore
저개발국 (48개)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epal, Niger,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 Sudan, Tanzania,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Zambia
캐리비안 국가 (21개)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onaire, British Virgin Islands, Curacao,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ab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int Eustatius, Sint Maarten, Trinidad and Tob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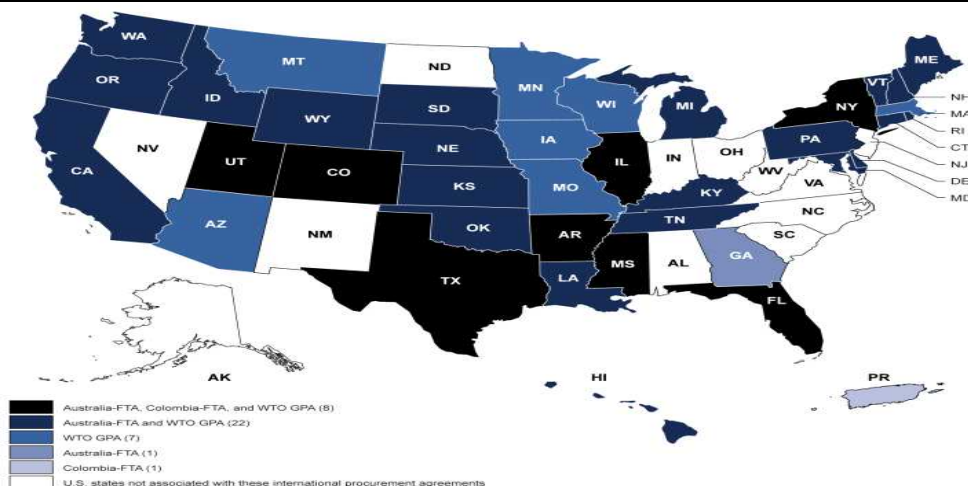
[자료원]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52.225-5, Trade Agreements (2016.10월 업데이트)

참고 바이아메리칸, 바이아메리카 및 통상협정법 차이점

분류	바이아메리칸	바이아메리카	통상협정법
적용 대상	연방기관의 일반물품(제조품, 원자재) 및 건설자재	주지방정부의 철강 및 제조품 (Manufactured Goods)	일부 연방기관의 일반물품, 건설자재 및 서비스
기본 요건	3,500달러 이상 일반물품 조달 시 미국산 제품 구입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에서 미국산 철강과 제조품 구매	일정 금액 이상 조달계약 시 WTO GPA 체결국, FTA체결국 제품은 미국산과 동일하게 취급
적용 방식	미국산 대비 외국산 제품의 입찰가격이 더 낮을 경우, 외국 제품에 일정 비율을 가산 (대기업 6%, 중소기업 12%)	기관에 따라 상이한 규정 보유. 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을 포함해야 함. (9페이지 표4 참고)	WTO GPA와 FTA에 명시된 양허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 구매에서 특정국 기업의 차별 없는 참여 보장
원산지 기준	(1)미국 내에서 채굴·생산된 원제품 및 원자재 (2)미국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부품가격이 총 부품가격의 50% 이상 (3)상업용 기성품(COTS)		(1)협정체결국에서 100% 재배·생산·제조되거나, (2) 일부라도 외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경우 협정체결국 내에서 상당한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
적용 예외	(1)미국산 사용이 공익에 반하거나, 공급부족, 외국산 대비 가격이 높은 경우 (2)통상협정법에 따라 최소 양허기준 이상의 구매	미국산 사용이 공익에 반하거나, 공급부족, 외국산 대비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1)중소기업계약 할당제품, 국방무기류, 연방교도소 산업 제품 등 부적격 제품의 경우 (2)협정 유예기관에 속하는 기관의 조달, 대통령 판단에 따라 금지하는 경우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그림1] GPA 및 FTA 시장개방 적용을 받는 주 현황



[자료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한미 FTA와 NAFTA에는 주정부 차원의 정부조달 개방은 포함되지 않음.

4 기타 미국산 구매 의무 관련 법규정

1 베리수정법(Berry Amendment), 국방부 미국산 조달 의무 규정

- (개요) 1993년에 영구 법률화된 「베리수정법」은 국방부가 특정군의 제품을 조달할 경우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
- (적용제품군) 식량, 의복, 텐트, 천·면사 등 섬유제품, 일반 및 계측 공구 등을 조달할 경우 필수적으로 미국산 구매를 요구
 - * 2006년까지 특수금속 조달도 적용 제품군에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베리수정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특수금속 구매제한 규정」⁹⁾으로 별도 관리됨.
- (예외조항)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조달금액이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해외 작전지역에서 구매 △응급 또는 비상 상황 △미국 내에서 가공 처리된 식품 등
 - － 「베리수정법」과 「특수금속 구매제한 규정*」은 통상협정법(TAA)에 따라 미국산 구매의무가 유예되지 않음. (WTO GPA에서 식품, 섬유, 특수 금속 제품을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¹⁰⁾)
 - * 국방부가 구매하는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 선박, 탱크, 차량 및 기타 군수품 제작에 포함된 특수금속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주조·생산(melt and produced)되어야 함. 특수금속은 니켈, 철, 티타늄, 지르코늄 등을 포함.

2 미국 재건과 재투자 법(ARRA),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 (개요) ARRA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국내 경기부양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종합 경기 부양 법(Stimulus Package)
 - － 2009~2019년 동안 인프라 투자 등에 총 7,870억 달러의 예산 투입*
 - * △저소득·중산층 가계 세금감면(2,600억 달러) △인프라 현대화(830억) △대체 에너지 투자(22억) △공공보건 확대(1,380억) △공공 교육개선(1,117억) △과학기술 개발지원(180억) △중소기업 지원(540억) 등

9) Specialty Metals Restriction (10 U.S.C 2533b) (http://www.acq.osd.mil/dpap/cpic/ic/restrictions_on_specialty_metals_10_usc_2533b.html)

10) Revised WTO GPA, United States Appendix I, Annex 1 (specifying that the WTO GPA does not apply to purchase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involving (1)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FSC) 83 (textiles) (other than pins, needles, sewing kits, flagstuffs, flagpoles, and flagstaff trucks); (2) FSC 84 (clothing and individual equipment) (other than luggage); (3) FSC 89 (food) (other than tobacco products); and (4) "specialty metals," among other things).

- (바이아메리칸) ARRA (연방)기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프로젝트 조달 시 미국산 의무구매 조항(Buy American Provision) 포함
 - 정부건물 또는 공공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제품 △파이프 등 철강관련 제품 △일반 제조품(manufactured good)이 적용대상
 - 적용 예외로 (1)미국에서 상당한 변형이 발생한 제품¹¹⁾, (2)미국산 구매가 여의치 않은 경우, (3)외국산이 25%이상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 (4)미국이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체결 당사국 간 상호 정부조달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도 WTO GPA와 한미 FTA에 따라 최소양허금액 이상의 조달 (제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참여 시 바이아메리칸 규정에서 유예됨.
- * 단, 주·지방정부 별 예외규정¹²⁾이 있고, 프로젝트 발주 기관(또는 기금배정 연방 기관)에 따라 바이아메리칸 적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박스2] 한국기업의 ARRA 원산지 표기 위반 기소사례

- ▶ 지난 3월15일, 북일리노이주 관할 연방법원에서는 ARRA 예산 배정과정에서 제품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로 한국기업(K社)을 배심원 유죄 판결함.
- ▶ K社는 지난 2009년 ARRA 기금이 투입되는 수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하수 처리용 송풍기(aeration blower) 납품(133만 달러)에 성공
- ▶ ARRA 예산 집행 감사에서 K社의 ‘바이아메리칸’ 규정 위반 소지 적발
 - 미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U.S.A) 제품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 공정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져, 완제품 형태로 수출된 것으로 ‘바이아메리칸’의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으로 판단
- ▶ 연방검찰, ‘바이아메리칸 위반’이 아닌 ‘사기 미수’로 기소
 - 피고(K社)측은 통상협정(GPA, FTA)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바이아메리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이에, 검찰은 바이아메리칸 위반이 아닌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기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기소

11) 부품 또는 생산원가의 외국산 비중과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제조(조립)된 제품이면 유예대상

12) 주정부별 특별 예외규정(<https://ustr.gov/sites/default/files/REVISED%20Appendix.pdf>)

III

WTO GPA 및 FTA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규정

1

WTO 정부조달협정 (GPA)

- **[개요]** GPA는 WTO 체제 안에서 국가 간 상호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
 - (연혁) 우루과이 라운드와 연계 1994년에 최초 체결된 GPA(1996년 발효)는 오랜 재협상 기간을 통해 2012년에 수정 조약이 체결됨. (2014년 4월부로 효력 발생)
 - (가입국) 현재 총 47개 WTO 회원국(18개 국가, EU 및 28개 EU가입국)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음.
 - 29개 WTO 회원국은 현재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 호주, 러시아 등 10개국¹³⁾이 GPA 가입 절차 중에 있음.
- **[개방규모]** WTO는 GPA를 통해 개방된 글로벌 정부조달(국제입찰) 시장이 연간 1.7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함.
 - 한편, 미국회계감사원(GAO)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¹⁴⁾(2017.2월)에 따르면, GPA로 인한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보고함.
 - GPA 전체 가입국(미국과 FTA체결국 포함)의 총 정부지출은 18.7조 달러, 이중 정부조달 시장은 4.4조 달러, GPA에 의해 개방된 조달 시장은 1.5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 (2008~2012년 연평균 기준)
 - GPA에 따라 미국이 개방한 조달시장은 8,370억 달러(전체 미국조달 시장 대비 48%)에 달하는 반면, 5대 GPA 가입국¹⁵⁾이 개방한 조달 시장은 3,810억 달러(전체 대비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 (표6 참고)
 - * 단, GAO는 최근 집계한 통계가 2010년이 마지막이고, 또한 국제 통계 수집의 어려움이 있어 정보 정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

13) Albania; Australia; China; Georgia; Jordan; Kyrgyz Republic; Oman;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4) <http://www.gao.gov/assets/690/682663.pdf>

15) EU, 일본, 한국, 노르웨이, 캐나다

[표5] 미국과 주요 5개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도 (2010년)

[백만달러]	GPA로 개방된 조달시장 ¹⁶⁾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정부기관	합계 (시장개방도) ¹⁷⁾	
미국	198,024	627,818	11,619	837,462 (48.3%)	1,735,219
EU	111,444	174,254	42,891	330,589 (20.3%)	1,627,615
노르웨이	1,846	2,821	351	5,018 (12.0%)	41,955
한국	1,385	3,279	13,709	18,372 (17.4%)	105,299
일본	13,300	11,681	미보고	24,981 (6.1%)	406,500
캐나다	2,250	미보고	미보고	2,250 (1.0%)	223,608
합계	328,249	819,853	70,570	1,218,672 (29.4%)	4,140,196

[자료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의 양허 범위]** 85개 연방 기관, 37개 주정부 및 기타 기관(공기업)이 GPA에 따라 조달시장 개방 양허 대상에 포함

○ (양허금액) 연방, 주·지방, 기타기관 별로 일정(최소양허) 금액 이상 상품·서비스 또는 건설서비스 조달에서 시장개방 원칙

－ 한국과 미국의 경우, 연방(중앙)정부 조달의 경우 최소양허금액은 동일하나, 지방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경우 양국이 상이하게 책정 (표7 참조)

[표6] WTO GPA 기준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양허 범위

조달주체		양허대상 기관 수	최소양허금액 (단위: 천 달러) ¹⁸⁾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미국	연방정부	85개	178	178	6,850
	주정부	37개	486	486	6,850(20,550) ¹⁹⁾
	기타기관	A리스트	7개	250	6,850(20,550)
		B리스트	3개	548	6,850(20,550)
한국	중앙정부	45개	178	178	6,850
	지방정부	A리스트	16개	274	20,550
		B리스트	51개	548	20,550
	기타기관	25개	548	548	20,550

[자료원] WTO GPA 협정문 부속서

16) 본 통계는 2010년 각국이 WTO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 집계

17) 시장개방도는 전체정부조달시장 대비 개방된 조달시장 합계

- (예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대출, 지분투자, 보증, 재정 인센티브 등 비구속적(non-contractual) 계약 또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²⁰⁾
 - 따라서 연방기금이 투입되는 주·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GPA 시장개방 대상에서 유예
- (주별예외) 미국의 50개 주정부 중 37개만이 GPA를 준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 13개²¹⁾는 GPA의 시장개방 규정에 구속되지 않음.
 -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 등이 GPA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GPA를 준용하는 주정부들도 모든 조달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시장개방 예외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 (표8 참고)

[표기] 주정부 별 조달시장 개방 예외 품목

GPA 적용 예외 품목	주
△건설용 철강 △자동차 △석탄	델라웨어/플로리다/일리노이/아이오와/메인/메릴랜드/미시건/뉴햄프셔/뉴욕/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와이오밍
△건설서비스	알칸소/캔사스/오클라호마/하와이/테네시
△서비스	미시시피/테네시
△소프트웨어	하와이
△자동차 △항공기	캔사스
△대중교통용 차량, 버스 등	뉴욕
△소고기	사우스다코타
△보트 △자동차 △버스 △관련 장비	로드아일랜드
△연료 △제지 △보트 △선박 류	워싱턴
△낚시 및 여가활동 위원회 조달	알칸소

[자료원] WTO GPA 부속서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 (기타예외) 연방(지방)정부는 예외적 특수 상황의 경우 시장개방 예외적용
 - 중소기업(소수계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정부가 조달의 일정액을 사전에 배정해 놓은(set-asides) 계약의 경우 시장 개방에서 제외함.
 - 정부기관별 특수상황(안보, 환경, 복지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핵에너지 관련 조달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

18) GPA 부속서에 SDR로 표기된 양허금액을 편의상 달러로 환산 (1SDR = 1.37달러, 2017.5.3.일자 환율)

19) 미국 주정부 및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조달에서 한국에 대한 양허화한선은 20,550천 달러로 높게 책정(한국과 동일하게)

20) Except where provided otherwise in a Party's annexes to Appendix I,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assistance that a Party provides, including cooperative agreements,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guarantees and fiscal incentives

21) 네바다, 뉴멕시코,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인디애나, 앨라배마, 오크하임,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조지아

2 한미 FTA 정부조달 개방 조항

- **[양허대상]** 한국 측은 51개 중앙부처 기관을, 미국 측은 79개 연방 기관을 정부조달 개방 대상에 포함시킴.
 - 양국 모두 지방정부(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기타 기관(공기업)을 조달 개방 대상에서 제외함.
 - 그러나, GPA 시장개방 대상에는 주정부 기관 및 공기업 포함
- **[양허금액]** 상품·서비스의 경우 10만 달러(원화 1억 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당시 환율 기준 7.4백만 달러)로 정함. 한미 FTA는 GPA에 비해 최소양허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진입장벽이 완화됨. (표9 참고)
- **[개방규모]**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GPA가 한미 FTA뿐만 아니라 여타 FTA의 정부조달 규정에 비해 개방 폭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적용대상) GPA는 연방정부 85개 기관이 양허 대상으로, 한국(79개)·콜롬비아(78개)·호주 FTA(78개) 및 NAFTA(53개) 등에 비해 양허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음.
 - (주정부) 미국 주정부 37개가 GPA를 준용하는 반면, 한미 FTA와 NAFTA에는 주정부 조달 개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²²⁾
 - 단, 한국과 캐나다는 FTA 체결국인 동시에 GPA 가입국인 바, GPA 규정을 적용 미국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표8] 미국이 주요국과 체결한 FTA의 정부조달 최소양허금액

[단위: 천 달러]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공기업)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47개 GPA회원국	178	6,850	486	6,850	250/548	6,850
FTA	한국	100	7,407 ²³⁾	미양허		미양허	
	호주	58	6,725	477	6,725	292/538	9,396/6,725
	콜롬비아	64	7,407	526	7,407	250/593	7,407
	NAFTA (캐나다기준)	25/50	6,500	미양허		25/50	6,500

[자료원] WTO GPA 부속서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22) 미-호주 FTA에는 30개 주, 미-콜롬비아 FTA에는 8개 주가 참여

참고 미국 연방정부 조달 프로세스

- (GSA)미국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 공급은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유사한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담당
 - GSA 내 연방구매서비스국(FAS : Federal Acquisition Service), 공공건설서비스국(PBS : Public Buildings Service), 기술변환서비스국(TTS : Technology Transformation Service) 등 3개의 하위조직이 있음
- (조달 프로세스) ① 사전준비, ② 입찰참가, ③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④ 계약협상 및 체결, ⑤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표9] 사전준비 및 입찰참가 시 구비사항

단계	구비사항	비 고
사전 준비	DUNS 발급	DUN & Bradstreet에서 부여하는 기업식별번호 (http://fedgov.dnb.com/webform)
	NAIC/SIC 코드 검색·확인	산업분류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국가간 공유 NAICS Association : www.naics.com/search.htm
	생산자 부호(CAGE Code) 신청	물품 및 서비스 생산 업체·품목 관리를 위한 5자리 ID
	MPIN 발급	과거실적정보시스템, 입찰사이트 접속 시 필요
	SAM(연방조달통합 관리시스템) 등록	SAM:미국 정부와 계약을 원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 필요
	Open Ratings Report 신청	과거이행성적 평가 및 입찰제안서 제출 시 필요함
입찰참가	발주예정서(Pre-Solicitation Notice) 확인	우리나라 사전규격공개에 해당, 조달기관 관련 일반정보 및 연락처 등의 추가정보 등을 제공하며, 발주예정서 뒷면에는 해당 발주에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됨
	입찰권유서(Solicitation) 확인	제안서 준비와 제출에 관한 지시사항이 포함되며,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의발생 시 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입찰자의 권한 설명

[자료원] 코트라: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유망품목 분석조사

- (주·지방정부 조달 프로세스) 연방정부와 조달절차는 유사하나, 구비사항은 주별로 상이함으로 개별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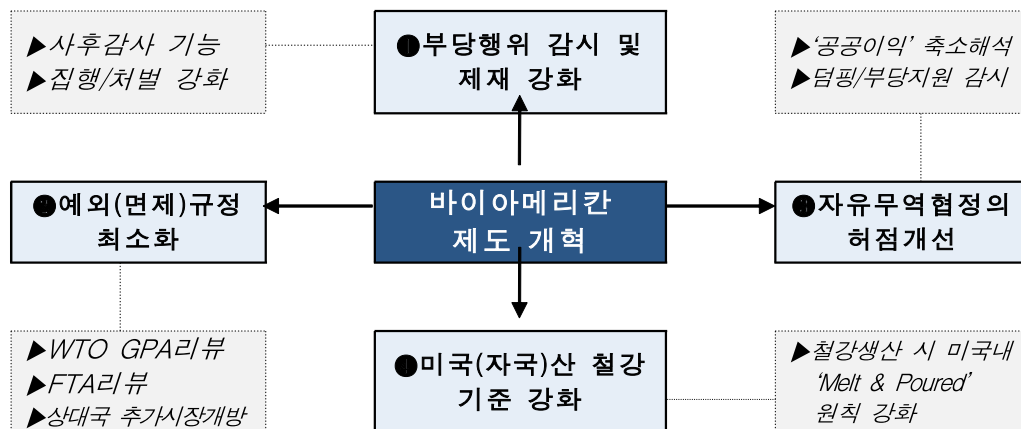
23) 500 SDR(한미FTA 협정에서 당시 환율로 계산), 현재 환율 적용 시 6,850천 달러

IV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 전망

1 트럼프 정부, 인프라 입법에 앞서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에 착수

-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이 필수
 - 따라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확대 법안 상정 전까지 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방안 마련 중
-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의 요체로 △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예외(면제) 규정 최소화 △자유무역협정의 허점개선 △미국(자국)산 철강 기준 강화를 내세움. (그림2 참고)

[그림2]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 방향과 액션플랜



[자료원] Mellman Group 자료 가공

- 한편, 인프라 투자확대,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공화당 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어 야당(민주당)과 백악관의 「낯선 협력 관계(strange alliance)」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
 -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주도하여 상정한 「바이아메리칸 개선법(2017)²⁴⁾」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 본 법안은 미국산 구매 의무 예외 사례를 투명 공개하고, 미국산 부품 의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포함

24) Buy American Improvement Act 2017 (<https://lipinski.house.gov/uploads/Buy%20American%20Improvement%20Act%20of%202017-HR904.pdf>)

2 ARR의 바이아메리칸 조항, 인프라 법안의 모델이 될 가능성

- 2009년 당시 ARRA(미국 재건 및 재투자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바이아메리칸 규정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
 - － △적용 대상품목²⁵⁾ △경제효과 △업종 간 이견 △국제협정 위배 소지 논란 속에 결국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ARRA에 포함되어 처리됨.
 - － 단, 상·하원 제출 원안에는 없던 무역협정(GPA 또는 FTA) 체결국에 대한 유예 규정이 최종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바이아메리칸의 취지가 상당 부분 희석됨. (GPA 가입국, FTA 체결국에게 사실상 시장개방)
-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법안 입법 과정은 재정 투입 규모나 정책 취지 면에서 유사한 과거 ARRA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 － 과연 트럼프가 주장하는 강력한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이 인프라 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

[박스3] ARRA 미국산 구매의무, 바이아메리칸 또는 바이아메리카 논란

- ▶ 입법 당시 일부에서 ARRA 연방지원금이 주·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 바이아메리카를 적용할 경우 주·지방정부(기타기관)는 GPA나 FTA의 조달시장 개방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 하지만, 연방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선별 지정하여 교부하는 ARRA 지원금은 주·지방정부 조달이 아닌 연방정부 조달의 성격이 강해 바이아메리칸 적용으로 확정²⁶⁾

3 트럼프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관철에 벌써부터 회의적 전망 제기

- 바이아메리칸은 건설 원가 상승, 타국의 무역보복 등을 초래하여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결국 전통 공화당 주류의 저항에 직면할 것
 - － 심지어 엘랜 차오 현 교통부장관도 2009년 당시 바이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주변에 해자를 파는 행위’ 라고 비판한 바 있음.²⁷⁾
 - － 러시아 철강기업의 자회사인 NLMK 등은 유력 로빙기관을 고용하여 바이아메리칸 저지를 위한 對의회 로비를 전개 중

25) 하원 안에서는 철강 관련 품목에만 미국산 의무구매 규정을 적용. 상원 법안은 철강 포함 제로품목 전체로 확대

26) ‘Buy American: Bad for Jobs, Worse for Reputation’ (Peterson Institute, 2009)

27) Anti-Trade Agenda a Real Economy Killer (Heritage Foundation, 2009)

- 인프라 투자 입법 과정에서 바이아메리칸 논란이 재현될 전망 속에 결국 ARRA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 카토연구소의 다니엘 이켄슨 박사는 바이아메리칸 규정은 현재 수준에서 ‘명목상 개선(cosmetic change)’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
- 2016년 말 통과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WIIN)에서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미국산 구매의무 조항을 영구화하는 데 실패한 바 있음.
 - 당시 해외 철강기업에 고용된 로비기업 패턴 보그스(Patton Boggs)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후문. 패턴 보그스는 직전직 하원의장 존 베이너 및 중요 공화당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공격적 활동 중

4] 규제강화 보다는 결국 「추가 시장 개방 요구」에 집중할 가능성

- 지난 4월 미국통상대표부가 발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역설적으로 바이아메리칸의 폐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²⁸⁾
 - 해당 보고서는 “근래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 정부의 자국산 구매 우대 정책(localization barrier)이 국제 교역 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미국은 단호하게 차별적인 자국산 우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힘.
 -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Buy American”이 관철될 경우, 교역 대상국들은 “Buy China”, “Buy Canada”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
 - 이런 추세는 오히려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 상무부 관계자는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 시에 교역 대상국들의 조달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Inside US. Trade 보도)
 - 그간 미국 측이 제기한 한미 FTA 개선사항 외에도 정부조달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 올 수 있어 우리정부의 대응마련 필요
- * 2017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정부의 IT 보안 인증 추가 요구 △정부기관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약가 정책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한 바 있음.

28) “Buy American, Hire American”: A Worrisome Sloga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7.3월

V

향후 우리기업의 바이아메리칸 대응방향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 우리기업의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국산 구매의무 제도(바이아메리칸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참여

-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재원의 75%는 주·지방(카운티, 시 등) 정부가 채권 발행과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 재원뿐만 아니라 사업 수요 발굴, 프로젝트 개발, 타당성 검토, 환경 평가,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서 주·지방정부의 역할이 지대함.
- 우리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 정부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WTO GPA에 참여하고 있는 37개 주정부는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면제, 외국(우리나라 포함) 기업에게 조달시장 개방 (그림1 참고, 19페이지)
 - * 단, 상당수의 주정부는 미국산(또는 지역) 구매의무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자국산 우대 구매 규정을 두고 있음.
- 연방정부 자금지원에서 배제(바이아메리칸 미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의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
 - 우리기업들은 연방정부 교부금이 배정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음.
 - * 「피난처 도시」란 불법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지자체를 통칭. 뉴욕, LA 등 미 전역 최대 300개의 시와 카운티, 주정부가 피난처 도시로 분류

[박스4] 피난처 도시들, 연방 자금지원 중단 방침에 강력 반발

- ▶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3.28일)
 -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이민자 단속 협력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피난처 도시)에는 향후 연방 보조금 지원 보류·중단·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포
- ▶ 뉴욕, LA,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대도시 시장들은 이번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성토
 - 피난처 도시정부들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힘. 실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

- 중국정부는 주·지방정부와 경제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우대 정책을 견제·우회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워싱턴 주 및 시카고 市 등 주·지방정부와 경제협력 외교를 통해 유착 관계를 확대해옴.
-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만 중국 기업들과 미국 주정부가 체결한 투자협정 규모가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박스5] 중국의 미국 주·지방정부와의 경제 외교 노력

- ▶ (캘리포니아) 2013.4월, 중국 상무부 및 6개 지방정부들과 무역·투자 협력 MOU 체결
 - 양국 기업인들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인프라, 의약품, 에너지, IT, 제조업, 환경 등 산업 등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
- ▶ (텍사스) 2014.9월, 중국 상무부 및 5개 지방정부들과 무역·투자 협력 MOU 체결
 - 상호 비즈니스 사절단 수용, 연구개발 협력 등을 위한 합동 실무그룹 조직·운영
- ▶ (아이오와) 2014.6월, 중국 상무부 및 4개 지방정부들과 무역·투자 협력 MOU 체결
 - 농산물 가공,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제약, 금융·투자 등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 증진
- ▶ (시카고) 2015.7월, 중국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청과 MOU 체결
 - 시카고-차이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설립 (중국 벤처의 미국 진출 지원 사업)
- ▶ (미시간) 2015.4월, 중국 4개 지방정부 등과 비즈니스 협력 MOU 체결
- ▶ (워싱턴) 2015.9월,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 시 워싱턴주 방문 시 중국 상무부와 MOU 체결

- 우리기업들은 주정부가 발굴한 인프라 프로젝트(solicited) 수주에 참여하거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유망 프로젝트(unsolicited)를 제안하여 사업화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는 연방 및 주·지방정부 규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함.
 - 우리기업들도 미국 현지진출을 고려할 때 각종 법 규제(연방, 주·지방 정부별), 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② 공공조달 경험이 많은 현지기업과 협업

- 미국시장 참여에 후발주자인 국내기업은 현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
 - ① 유럽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 및 컨설팅 분야 ② 일본은 첨단 초고속열차 기술 ③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자본력 분야에서 우위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중에 있음.
 - 반면 우리 기업들은 후발주자로서 기술경쟁력, 자본력, 현지 사업수행 경험 등에서 열위에 있음
 - * 설계, 시공, 기자재공급,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과 함께 금융역량까지를 포함한 복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
 -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주·지방정부 사업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소수계기업(8a*)과의 합작투자 또는 M&A를 통해 주·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주, 사업수행 실적 추가
 - * 8a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조달에 특혜를 주는 제도
 - 현지협력사를 통해 현지사정에 어두운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인 비용 산정, 인력 관리, 기타 인허가 등 규제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해소
- 주·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수행 실적을 쌓아 미국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 필요
 - 대규모 토목공사 보다는 주차장 현대화, 고속도로 휴게소, 스포츠·유흥 시설, 정부청사 건설 등 특화된 틈새시장을 공략
 - 향후 지속 확대되는 유지·보수 시장에 참여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현지기업과 생산공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지화 노력도 검토 필요

③ 민간-공공 파트너십(P3) 사업 참여

-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제안함.
 - 현재 미국 전체 인프라 시장에서 P3 프로젝트(민간자본 사업)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나, 향후 3~5년 안에 15%까지 증가할 전망
- 연방정부 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P3사업의 경우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우리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됨.
 - 금융기관(국책은행, 연기금 등), 건설사, IT기업, 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 모색 필요
 - * 비교적 수익이 안정적이고 민간투자 비중이 높은 에너지 인프라 진출이 유망할 전망
-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민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와 동시에 자국 기업(건설사, 제조사)을 패키지로 진출시키는 전략 활용
 -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2017.2월)에서 일본 연기금(GPIF)을 동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
 - * 1.14조 달러에 달하는 연기금 총액 중 5% 이상을 미국 인프라 채권 구매에 사용할 계획²⁹⁾
 - 미국 내 민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금융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치열하게 각축 중 (박스6 참고)
 - * 달라스-휴스턴 초고속철도, 샌프란시스코-LA 초고속 철도 등

[박스6] 캘리포니아 고속철 수주경쟁 현황

- ▶ (일본) 아베총리는 '15년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여 고속철 수주를 위한 경제 외교에 주력하는 한편 카와사키중공업과 동일본철도가 주축이 된 Japan California High Speed Rail Consortium을 구성하여 수주경쟁에 돌입.
 -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검증된 기술안정성을 마케팅에 활용 (지진 다발지역인 캘리포니아를 위한 내진 기술 강조)
- ▶ (중국) 국영기업인 CSR와 CNR Corp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억 달러 상당의 고속열차 차량 수주 경쟁에 참여.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320억 달러의 공격적 차관 지원을 약속하고, 現 브라운 주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오클랜드시에 고속열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유력한 후보로 부각

29) "Japan's pension megafund to invest in US infrastructure", NIKKEI (2017.2월 보도)

2017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 시대의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	2017.1
17-002	2017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1
17-003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 통상 일정	2017.1
17-004	호주 화장품시장 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1
17-005	트럼프 취임식 발표에 따른 주요국 반응 조사	2017.1
17-006	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2017.2
17-007	미 트럼프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 조사	2017.2
17-008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 여건 분석	2017.2
17-009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17.3
17-010	2017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3
17-011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2017.3
17-012	중동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3	CIS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4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2017.3
17-015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민국 영향 분석	2017.4
17-016	유럽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4
17-017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4
17-018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 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2017.4
17-019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2017.5
17-020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2017.5
17-021	인도 자동차 & 부품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5
17-022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6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2017.1
17-002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7.3

17-003	新통상시대 중남미 주요국 다각화 정책과 시사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중남미 주요국의 정책과 기회요인	2017.3
17-004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분석과 시사점	2017.4
17-005	저성장 시대 일본기업의 성장전략 분석과 시사점	2017.4
17-006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기업의 현지화 전략	2017.5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사례집	2017.1
17-002	ICT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1
17-003	잘나가는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	2017.1
17-004	2016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7.2
17-005	2017 해외진출종합핸드북	2017.2
17-006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7.3
17-007	2016 서비스업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3
17-008	2017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2017.3
17-009	이란 진출 종합가이드북 2017	2017.3
17-010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6	2017.3
17-011	2016 IP-DESK 백서	2017.3
17-012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투자유치 대응전략	2017.3
17-013	2016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7.3
17-016	코트라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	2017.4
17-017	정상외교경제활용 백서 2013-2016	2017.4
17-01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Machinery Parts	2017.4
17-01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Automobile Parts	2017.4
17-020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Shipbuilding & Offshore Plants	2017.4
17-02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Aerospace	2017.4
17-02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Pharmaceuticals	2017.4
17-02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Food and Beverage	2017.4
17-02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Medical Device	2017.4
17-02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Display	2017.4
17-02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ICT	2017.4
17-02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Semiconductors	2017.4
17-02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New Renewable Energy	2017.4

17-02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Petrochemical	2017.4
17-030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Fine Chemicals	2017.4
17-03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Logistics and Distribution	2017.4
17-03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Real Estate	2017.4
17-03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Tourism & Leisure	2017.4
17-03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2016 M&A	2017.4
17-035	SEOUL FOOD 2017 디렉토리	2017.4
17-036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투자유치 방안	2017.4
17-037	권역별·분야별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로드맵	2017.5
17-038	수출바우처사업 활용가이드	2017.5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7.1
17-002	2017 中美시장 진출확대 설명회	2017.1
17-003	이란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1
17-004	쿠바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2
17-005	(매칭페어) 제1차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활용 상담회	2017.2
17-006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7차 수요포럼	2017.2
17-007	2017 유엔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17)	2017.2
17-008	2017 아세안 시장 진출 설명회	2017.2
17-009	2017 GBMP 보건의료 프로젝트 설명회 (Global Healthcare Project Plaza 2017)	2017.3
17-010	GBMP 2017 글로벌 공공조달 의료기기 시장진출 설명회	2017.3
17-011	케냐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2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멕시코 진출전략 세미나	2017.3
17-013	러시아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4	2017 세계 유통시장 진출 쇼케이스 전략설명회	2017.3
17-015	2017 유라시아 진출 세미나	2017.4
17-016	2017 국내복귀기업대상 경영지원세미나	2017.4
17-017	Global Animation Market Trend and Strategy	2017.4
17-018	우즈베키스탄 KSP 섬유산업 투자진출 세미나	2017.4
17-019	Global Project Plaza 2017	2017.4

17-020	중국시장진출의 초석, 홍콩 활용방안 (Hong Kong: Your Gateway to China)	2017.4
17-021	Latin Business Week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	2017.5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년 대중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2017.1
17-002	2017 차이나 비즈니스 트렌드	2017.2
17-003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2017.3
17-004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017.4
17-005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사례	2017.5
17-006	2017 홍콩 신정부 출범으로 보는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2017.5
17-007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동향과 시사점	2017.5
17-008	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2017.6

□ GIP (Global Issue Paper)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미국의 對수단 경제제재 해제 및 향후전망	2017.1
17-002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7.2
17-003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중·일 무역·투자 장벽 분석 및 시사점	2017.4



작성자

- ◆ 워싱턴 무역관 이정민 차장
- ◆ 시장조사팀 강환국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7-019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5월 29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조사팀
(02-3460-7591)

ISBN : 979-11-6097-267-2(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Global Market Report